

# 의안검토보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 4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발의자	서초구청장(재무과)	제출년월일	2018.08.09.
검토위원	전문위원 최충열		

## I

##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세입·세출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 633,936백만원
- 세출 결산액 : 539,858백만원
- 결산상잉여금 : 94,078백만원

결산상잉여금 94,078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4,949백만원, 사고이월액 18,70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6,591백만원 등 이월사업비 40,243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687백만원을 공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148백만원임.

## (2)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 85,442백만원
- 세출 결산액 : 51,322백만원
- 결산상잉여금 : 34,120백만원

결산상잉여금 34,12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0원, 사고이월액 60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0원 등 이월사업비 603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04백만원임.

## 나. 기금결산

2017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13,076백만원으로 2016년말에 비하여 14,87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6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 통합관리기금	46,184백만원
- 청사건립기금	103,348백만원
-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1,167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6,637백만원
- 사회복지진흥기금	378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3,464백만원
- 보육기금	5,751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2,983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027백만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02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4,613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2,519백만원
- 화훼및농업육성기금	1,489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6,342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2,176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2,397백만원

## 다. 예비비지출

### (1) 일반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은

- 예비비예산액	7,543백만원
- 지출결정액	5,181백만원
- 지출액	4,99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0원으로서

그 사용내역은 소송배상금 등 총 18건임.

### (2) 특별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은

- 예비비예산액	30,725백만원
- 지출결정액	540백만원
- 지출액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540백만원으로서

그 사용내역은 서초역 주차빌딩 리모델링 공사 1건임.

## 라. 재무제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13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함.

### (1) 재무제표의 구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첨부서류(채권현재액 보고서)

###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 ○ 재정상태표

- 총 자산 : 5,192,253백만원
- 총 부채 : 37,593백만원
- 순 자산 : 5,154,660백만원

- 재정운영표
  - 사업순원가 : 149,926백만원
  - 관리운영비 : 127,419백만원
  - 비배분비용 : 23,539백만원
  - 비배분수익 : 41,148백만원
  - 재정운영순원가 : 259,736백만원
  - 일반수익 : 299,913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 (40,177)백만원

- 순자산 변동표
  - 기초 순자산 : 5,048,498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 (40,177)백만원
  - 순자산 증가 : 76,658백만원
  - 순자산 감소 : 10,672백만원
  - 기말 순자산 : 5,154,660백만원임.

#### 마. 성과보고서

##### ○ 성과지표 달성현황

2017회계연도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3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26개, 달성 87개, 미달성 25개로 달성율 81.9%임.

#### 바. 채권의 결산

2017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3,274백만원으로서 2016년말에 비하여 5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 내역은

- 일반회계 : 7,958백만원
- 특별회계 : 53백만원
- 기 금 : 5,263백만원임.

#### 사. 채무의 결산

2017회계연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음. 끝.

# 목 차

1.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	6
2. 세입 결산 .....	11
3. 세출 결산 .....	17
4. 예비비의 결산 .....	21
5. 이월사업비 결산 .....	22
6.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	27
7. 계속사업비 결산 .....	31
8. 기금 결산 .....	32
9. 채권 채무 결산 .....	33
10. 재산의 총괄 .....	34
11.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	36
12. 금고의 결산 .....	36
13. 성인지예산 결산 .....	37
<b>III 검토의견 .....</b>	<b>37</b>
참고 1.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재건위소관) .....	55
참고 2.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재건위소관) .....	56

## 1.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 가. 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예산현액	결산액	%	예산현액	결산액	%	
합 계	695,857,628	719,378,124	103.4	695,857,628	591,179,886	85.0	128,198,239
일반회계	610,325,333	633,936,072	103.9	610,325,333	539,857,878	88.5	94,078,194
특별회계	85,532,295	85,442,052	99.9	85,532,295	51,322,007	60.0	34,120,045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6,381억 2,936만 4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577억 2,82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58억 5,76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30억 9,858만 2천원(17.4%) 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103억 2,533만 3천원, 특별회계는 855억 3,229만 5천원임
- 세입결산액은 7,193억 7,812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3.4%이며, 전년대비 1,079억 4,299만 2천원(17.7%)이 증가했음
- 세출결산액은 5,911억 7,98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371억 522만 원(30.2%)이 증가했고, 예산현액의 85%를 집행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의 차감액으로 총 1,281억 9,823만 9천원, 세입결산액 대비 17.8%이며, 2016년보다 291억 6,222만 7천원 감소했음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49억 4,914만 3천원, 사고이월 193억 623만 5천원, 계속비 이월 165억 9,124만 5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9,964만 5천원을 공제한 816억 5,197만 1천원이며, 2016년도 947억 6,832만 6천원 보다 13.8%가 감소함

※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28쪽 참고

## 나.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 수 납 액			진도율 (%) (다/가)	징수율 (%) (다/나)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계	695,857,628	815,420,604	719,378,124	96,042,480	3,676,552	92,365,928	103.4	88.2
일반회계	610,325,333	696,619,815	633,936,072	62,683,743	3,544,570	59,139,173	103.9	91.0
특별회계	85,532,295	118,800,790	85,442,052	33,358,737	131,982	33,226,755	99.9	71.9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103억 2,533만 3천원과 특별회계 855억 3,229만 5천원을 합한 6,958억 5,76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30억 9,858만 2천원(17.4%)이 증가된 것임
- 실제 수납액은 7,193억 7,812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6,958억 5,762만 8천원) 대비 235억 2,049만 6천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에, 징수결정액(8,154억 2,060만 4천원) 대비 960억 4,24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8.2%로 전년도(86.2%)보다 2% 높아졌음
- 결손처분액은 36억 7,655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5%이며, 전년 대비 11억 8,524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결손처분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17억 3,545만 5천원(47.2%), 시효소멸 17억 2,639만 4천원(47%), 무재산 1억 821만 9천원(2.9%), 행방불명 9,754만 9천원(2.7%), 평가액부족 893만 5천원(0.2%)

※ 2017회계연도 결산서 32~34 / 609쪽 참고

○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923억 6,59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3%이며, 2016년도 보다 26억 5,641만 6천원 감소된 규모임

**미수납액 사유**

납세태만 317억 5,894만원(34.4%) 폐업 또는 부도 221억 6,867만 8천원(24%)  
 무재산 107억 6,294만 8천원(11.7%) 자금압박 16억 2,168만 2천원(1.8%)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5억 7,326만 9천원(1.7%) 행방불명 10억 9,020만 6천원(1.2%)  
 소송계류 3억 4,289만 7천원(0.4%) 국외이주 4억 7,391만 9천원(0.5%)  
 기 타 225억 7,338만 9천원(24.4%)

※ 2017회계연도 결산서 615쪽 참고

**다.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나)	지출액 (다)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불용)	
				계 (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금 액 (마=가다라)	% (마/가)
계	695,857,628	625,028,972	591,179,886	40,846,623	4,949,143	19,306,235	16,591,245	63,831,119	9.2
일반 회계	610,325,333	573,103,466	539,857,878	40,243,124	4,949,143	18,702,736	16,591,245	30,224,331	5.0
특별 회계	85,532,295	51,925,506	51,322,007	603,499	-	603,499	-	33,606,789	39.3

○ 집행율(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5%이고, 지출액은 5,911억 7,988만 6천원으로 2016년도 집행율 76.6% 보다 8.4% 증가됨

- 회계별 집행율은 일반회계가 88.5%, 특별회계는 60%이며, 2016년도 보다 일반회계 4.6% 증가, 특별회계는 37.8% 증가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408억 4,662만 3천원으로 2016년도 보다 168억 8,164만 1천원 감소함

- 명시이월 49억 4,914만 3천원, 사고이월 193억 623만 5천원, 계속비이월은 165억 9,124만 5천원임

○ 집행잔액(불용액)은 638억 3,111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9.2%이며,

2016년도(13.7%)보다 불용율은 4.5%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171억 2,499만원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율은 5%, 특별회계는 39.3%임

**불용 사유**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189만 7천원  
(일반회계 10억 7,189만 7천원, 특별회계 0원)
- 예산절감(유보액) 17억 2,383만원  
(일반회계 16억 611만원, 특별회계 1억 1,772만원)
- 예산집행 잔액 196억 6,845만원  
(일반회계 164억 6,622만 6천원, 특별회계 32억 222만 4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3,987만 8천원  
(일반회계 88억 3,809만 8천원, 특별회계 1억 178만원)
- 예비비 324억 2,706만 4천원  
(일반회계 22억 4,200만원, 특별회계 301억 8,506만 4천원)

※ 2017회계연도 결산서 659~812쪽 참고

**라.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38,267,642	5,720,346	4,996,488	4,996,488	539,572	184,286
일반회계	7,543,006	5,180,774	4,996,488	4,996,488	-	184,286
특별회계	30,724,636	539,572	0	0	539,572	-

○ 예산액 382억 6,764만 2천원 중에서 총 19건 57억 2,034만 6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중 49억 9,648만 8천원을 지출하고 1억 1,842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 부서별 집행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6건으로 청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업무추진, 소송배상금 등으로 49억 9,648만 8천원임

## 마.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			2017년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	198,202,479	14,873,545	25,844,421	10,970,876	213,076,024

○ 2017년도말 현재기금은 총 16개 기금에 2,130억 7,602만 4천원으로 이는 2016년도말 현재액 보다 148억 7,354만 5천원 증가됨

※ 2017회계연도 결산서 417~469쪽 참고

## 2. 세입 결산

### 가. 일반회계

#### (1) 지방세 수입-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 수 결정액 (나)	과오납 환불액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부과율 (나/가)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계	181,954,036	215,181,328	625,631	203,739,356	2,026,705	9,415,267	118.3	112.0	94.7
등록면허세	29,803,281	36,817,027	387,651	36,531,202	-	285,825	123.5	122.6	99.2
재 산 세	150,826,755	167,514,544	237,010	165,937,501	-	1,577,043	111.1	110.0	99.1
지난년도 수입	1,324,000	10,849,757	970	1,270,653	2,026,705	7,552,399	819.5	96.0	11.7

- 지방세 결산액(실제수납액)은 2,037억 39,354천원으로 2016년도 보다 196억 5,355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다/가)이 112%로 2016년도(108.4%)보다 3.6%증가함
- 부과율(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8.3%로 2016년도(115.0%)보다 3.3% 증가함
-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4.7%로 2016년도(94.3%)보다 0.4% 증가함
  - 주요세목별로 등록면허세는 365억 3,120만 1천원으로 2016년도(320억 7,710만 1천원)보다 44억 5,410만원 증가함
  - 재산세는 1,659억 3,750만 1천원으로 2016년도(1,489억 8,314만 8천원)보다 169억 5,435만 3천원 증가함
- 과오납 환불은 6억 2,563만 1천원으로 2016년도(13억 8,265만 5천원)보다 7억 5,702만 4천원 감소하고 실제 수납액 대비 0.3%로 2016년도(0.75%)보다 0.45% 하락함

- **결손처분액**은 20억 2,670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9%이며, 2016년도 (6억 4,605만 9천원) 보다 13억 8,064만 6천원 증가함

**결손 사유**

배분금액부족 17억 3,508만 5천원, 시효소멸 7,810만 3천원,  
행방불명 9,754만 9천원, 무재산 1억 703만 4천원, 평가액 부족 893만 4천원

※ **배분금액부족** : 독촉, 최고 → 압류 → 공매 →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 → 체납총당 →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결손처분의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sup>1)</sup>

※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sup>2)</sup>

-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은 94억 1,526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4%이며, 2016년도(104억 3,344만 3천원) 보다 10억 1,817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1)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월(체납) 사유**

무재산 25억 9백만 4천원, 행방불명 2억 5,490만 2천원, 납세태만 8억 7,249만원, 폐업 또는 부도 31억 3,328만 2천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5억 4,046만 8천원, 국외이주 8,754만 6천원, 자금압박 10억 1,757만 6천원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 (세무1과) 등록면허세 ..... 285,825천원
- 재산세 ..... 1,577,042천원
- 지난년도수입 ..... 7,552,399천원

※ 2017회계연도 결산서 603~619쪽 참고

**(2) 세외 수입-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추경반영)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결손처분 (라)	다음연도 이월액 (마=나-다라)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과 별 체납 점유율
구 전체	97,409,253	150,888,695	99,646,926	1,517,864	49,723,905	102.3%	66.0%	100%
재정건설위원회	75,242,782	127,994,026	77,405,202	1,517,864	49,070,960	102.9%	60.5%	98.7%
기획재정국	56,808,480	107,787,770	59,676,058	1,517,864	46,593,847	105.0%	55.4%	93.7%
도시관리국	4,462,370	5,599,390	4,560,146	0	1,039,244	102.2%	81.4%	2.1%
안전건설교통국	12,698,674	12,476,913	11,298,622	0	1,178,291	89.0%	90.0%	2.4%
보 건 소	1,273,258	2,129,953	1,870,376	0	259,578	146.9%	87.8%	0.5%

- 세외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996억 4,693만 6천원 중 77.7%인 774억 520만 2천원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2.9%이며, 2016년 결산액(165억 3,151만 8천원)보다 608억 7,368만 4천원이 증가함

구분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진도율	징수율	진도율	징수율
구 전체	102.1	57.5	102.3%	66.0%
기획재정국	112.1	41.9	105.0%	55.4%
도시관리국	<b>74.3</b>	<b>58.7</b>	<b>102.2%</b>	<b>81.4%</b>
안전건설교통국	97.3	89.5	89.0%	89.5%
보 건 소	101.5	86.7	146.9%	87.8%

○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내역

※ 2017년 실제수납액(전년도 대비 증가된 금액)

- 무허가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주거개선과) ..... 21억원(20억원)
-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건축과) ..... 7억원(7억원)
- 가로수원인자부담금(공원녹지과) ..... 4억원(2억원)
-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건설관리과) ..... 28억원(1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건설관리과) ..... 2억원(1억원)
- 구유재산변상금(건설관리과) ..... 2억원(2억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교통행정과) ..... 19억원(1억원)
-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건강정책과) ..... 10억원(4억원)

○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내역

※ 2017년 실제수납액(전년도 대비 증가된 금액)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주거개선과) ..... 4천만원(△2억원)
- 공원녹지점용료(공원녹지과) ..... 5억원(△2억원)
- 그린벨트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공원녹지과) ..... 3천만원 (△1억원)

○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279억 9,402만 7천원 대비 실제수납액 774억 520만 2천원으로 징수율은 60.5%임

※ 2016년 81.8%, 2015년 69.4%, 2014년 82.0%

○ 결손처분은 15억 1,786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1,279억 9,402만 7천원)의 1.2%로 모두 시효결손임

- ※ 결손처분의 원인은 모두 소멸시효임
- ※ 2015·2014년 결손처분 없음

-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은 490억 2,380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률은 38.3%
  - ※ 다음연도 이월액 2016년 18.9%, 2015년 30.6%

○ 세외수입 체납액 1억원 이상

- (세무1과) 지난년도수입 ..... 46,533,380천원
- (주거개선과) 과징금 및 과태료등 ..... 579,930천원
- (건축과) 과징금 및 과태료등 ..... 290,697천원
-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 136,084천원
- (교통행정과) 과징금 및 과태료등 ..... 965,501천원
- (건강정책과) 과징금 및 과태료등 ..... 234,801천원

**(3) 의존 수입-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진도율	징수율
	(가)	(나)	(다)			(다/가)	(다/나)
구 전 체	330,962,044	330,549,790	330,549,790	-	-	99.8%	100%
<b>재정건설위원회소관</b>	<b>169,152,075</b>	<b>171,042,008</b>	<b>171,042,008</b>	-	-	<b>101.2%</b>	<b>100%</b>
지방교부세	10,179,000	10,707,398	10,707,398	-	-	105.2%	100%
조정교부금	15,292,504	16,750,162	16,750,162	-	-	109.5%	100%
보 조 금	13,412,117	13,315,993	13,315,993	-	-	99.3%	100%
보전수입 등	130,268,453	130,268,455	130,268,455	-	-	100.0%	100%

- 지방교부세 결산액(실제수납액)은 107억 739만 8천원
- 조정교부금(실제수납액)은 167억 5,016만 2천원
- 보조금 결산액(실제수납액)은 97억 6,868만 6천원
- 보전수입 등(실제수납액)은 1,302억 6,845만 5천원으로,

구 전체 의존수입 중 재정건설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83.6%이며, 재정건설위원회에 기획재정국 편입으로 대폭 증가함

※ 2017회계연도 결산서 29~90쪽 참고

## 나. 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처리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85,532,295	118,800,790	85,442,052	131,982	33,226,755	99.9%	72%
<b>주차관리과</b>	<b>85,225,803</b>	<b>118,385,859</b>	<b>85,092,990</b>	<b>131,982</b>	<b>33,160,887</b>	<b>99.8%</b>	<b>71.9%</b>
세외수입	30,006,082	63,225,098	29,962,228	131,982	33,160,887	99.9%	47.4%
보조금	160,000	71,042	71,042	0	0	44.4%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5,059,721	55,059,720	55,059,720	0	0	100%	100%

※ 2017회계연도 결산서 385~406쪽 참고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8%로 2016년도보다 0.7% 하락하였으며, 징수율은 71.9%로 2016년도보다 4.3% 상승하였고, 결손처분은 1억 3,198만 2천원으로 2016년도(1억 6,214만 9천원)보다 3,016만 7천원 감소함

※ 결산율 2016년 100.5%, 2015년 101.5%

징수율 2016년 67.6%, 2015년 65.2%

### ○ 특별회계 체납액

- (주차관리과) 과징금 및 과태료등 ..... 3,146,976천원
- (주차관리과) 지난연도수입 ..... 30,145,893천원

### 3. 세출 결산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80억 4,835만 5천원에서 1,435억 2,986만 8천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3억 441만 2천원으로 불용율은 22.4%로 예산현액에 5,337억 3,224만 8천원으로 2016년도(869억 1,851만원) 대비 4,468억 1,373만 8천원 증가함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 (다)	집 행 잔 액 (라=가-나-다)	불용율(%)	
					2017	2016
재건위	198,048,355	143,529,868	10,214,074	44,304,412	22.4	24.5
일반회계	112,822,552	92,501,960	9,610,575	10,710,016	9.5	7.7
특별회계	85,225,803	51,027,908	603,499	33,594,396	39.4	73.1

#### 가. 일반회계-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 (다)	집 행 잔 액 (라=가-나-다)	불용율(%)	
					2017	2016
구 전 체	610,325,333	539,857,878	40,243,124	30,224,331	5.0	5.7
재정건설위원회	112,822,552	92,501,960	9,610,575	10,710,016	9.5	7.7
기획재정국	8,761,144	5,790,270	-	2,970,874	34.0	23.8
도시관리국	25,766,381	21,168,187	1,904,458	2,693,735	10.5	8.7
안전건설교통국	47,787,799	37,690,557	7,626,093	2,471,149	5.2	7.5
보건소	30,507,228	27,852,946	80,024	2,574,258	8.4	7.4

○ 세출예산 집행율(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로 2016년도(86.3%)보다 4.3% 하락함

※ 2016년 86.3%, 2015년 82%

○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은 107억 1,001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로 2016년도보다 1.8% 상승함

※ 2016년 7.7%, 2015년 8.4%

-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9,479만원, 예산절감이 7억 568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6억 7,424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9,329만 6천원, 예비비 22억 4,200만원임

(단위 : 천원)

과 목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0,224,331	1,071,897	1,606,110	16,466,226	8,838,098	2,242,000
<b>재정건설위원회</b>	<b>10,710,018</b>	<b>594,790</b>	<b>705,684</b>	<b>5,674,248</b>	<b>1,493,296</b>	<b>2,242,000</b>
기획재정국	2,970,874		256,081	460,655	12,138	2,242,000
도시관리국	2,693,736	545,258	125,763	1,820,914	201,801	
안전건설교통국	2,471,150	46,011	220,453	2,158,782	45,904	
보건소	2,574,258	3,521	103,387	1,233,897	1,233,453	

○ 집행잔액 1억원이상 또는 불용율 30%이상인 사업

※ 집행잔액(불용률)

(기획예산과)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 43,300천원(49.3%)
-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 ... 152,827천원(72.0%)

(재무과)

-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 25,566천원(35.2%)
- 국·시유지관리 ..... 12,138천원(38.0%)

(세무1과)

-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 27,561천원(44.0%)

(주거개선과)

- 공동주택 관리지원 ..... 272,596천원(17.2%)
- 주택재건축 정비 ..... 124,606천원(76.7%)

(도시계획과)

-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 106,580천원(12.6%)

**(공원녹지과)**

-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345,472천원(26.9%)
- 공원유지관리 ..... 124,388천원(5.90%)
- 노후근린공원 재정비 ..... 868,904천원(17.3%)
-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 238,657천원(4.7%)
-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 174,772천원(7.4%)

**(안전도시과)**

- 사회복무요원관리 ..... 150,160천원(25.2%)
- 방법용 CCTV 운영 ..... 311,855천원(5.8%)

**(도로과)**

-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 113,921천원(9.3%)
- 조명시설물 관리 ..... 108,936천원(5.1%)
- 인력운영비 ..... 124,901천원(12.5%)

**(물관리과)**

- 빗물펌프장 운영 ..... 219,112천원(31.7%)

**(교통행정과)**

- SEOCHO-BIKE(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146,330천원(63.7%)

**(건강정책과)**

- 인력운영비 ..... 384,699천원(3.5%)

**(건강관리과)**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 24,800천원(34.8%)
-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 123,523천원(19.0%)
- 국가예방접종 실시 ..... 1,168,587천원(19.4%)
-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11,240천원(62.4%)
-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 19,500천원(100%)
-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 55,355천원(31.0%)

**※ 2017회계연도 결산서 91~363쪽 참고**

## 나. 특별회계-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가)	(나)	(다)	(라=가-나-다)	2017	2016
구 전 체	85,532,295	51,322,007	603,499	33,606,789	39.3	72.8
재정건설위원회	85,225,803	51,027,908	603,499	33,594,396	39.4	73.1
주차장특별회계	85,225,803	51,027,908	603,499	33,594,396	39.4	73.1
교통행정과	3,773,200	3,738,175	0	35,025	0.9	
주차관리과	81,452,603	47,289,733	603,499	33,559,371	41.2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2억 2,580만 3천원 대비 510억 2,790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59.9%이며, 2016년도에 비해 38% 상승함

※ 집행율 2016년 21.9%, 2015년 19.3%

- 집행잔액(불용율) 1억원이상 또는 불용율 30%이상인 사업

(주차관리과)

※ 집행잔액(불용률)

-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 41,430천원(46.6%)
-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 625,805천원(5.9%)
-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113,120천원(10.2%)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113,073천원(83.7%)
-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 140,109천원(35.6%)
- 거주자우선주차 민간 위탁금 ..... 131,966천원(16.8%)
-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 183,203천원(10.1%)
-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 290,983천원(39.7%)
-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 ..... 11,700천원(45.0%)
-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 172,882천원(7.1%)
- 인력운영비 ..... 1,265,961천원(29.5%)
- 기본경비 ..... 192,760천원(44.3%)

※ 2017회계연도 결산서 385~406쪽 참고

## 4. 예비비의 결산

### 가. 일반회계-예비비 결산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4,300만 6천원으로서 소송배상금 사업 외 17건 51억 8,077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9억 9,648만 8천원을 지출하고 1억 8,42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는 총 5건 12억 6,276만 8천원을 우면산산사태 소송배상금 등으로 지출함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사유	지출일
구 전체		5,180,774	4,996,488	4,996,488		
<b>재정건설위원회</b>		<b>1,011,072</b>	<b>1,262,768</b>	<b>1,262,768</b>		
공공녹지과	소송배상금	625,896	625,896	625,896	우면산산사태 소송배상금 지급	2017.01.24
공공녹지과	소송배상금	279,666	279,664	279,664	우면산산사태 관련 손해배상금 부족예산 확보	2017.03.10
공공녹지과	소송배상금	93,902	93,901	93,901	말죽거리근린공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판결금 부족예산확보	2017.04.14
공공녹지과	소송배상금	182,597	182,596	182,596	우면산 산사태 소송배상금 지출	2017.04.18
공공녹지과	소송배상금	80,711	80,711	80,711	우면산산사태 소송배상금 (사건명:2016나2045333)	2017.05.19

※ 2017회계연도 결산서 377~380쪽 참고

## 나. 특별회계-예비비 지출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7억 2,463만 6천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업에 5억 3,957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0원을 지출하고 전액 이월함

부서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사유	지출결정일자	지출일
합 계		539,572					
주 차 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539,572			서초역 주차빌딩 리모델링 공사	2017. 05.25	

※ 2017회계연도 결산서 409~411쪽 참고

## 5. 이월사업비<sup>3)</sup> 결산

### 가. 명시이월

- 일반회계는 총 9건, 49억 4,914만 3천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6건, 35억 1,330만 4천원임

※ 2016년 : 명시이월 없음

### 3)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 명시이월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㉑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㉒	명시이월액 ㉓	이월사유
합 계(6건)			4,718,490	2,886,794	1,077,829	3,513,304	
도 시 계획과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시설비	761,600	682,427	341,214	341,214	준공기한 미도래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재정비	시설비	334,690	306,456	134,367	172,09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8.5.18)
물 관 리 과	방배로82 일원 노후하수암 거 정비	시설비	500,000	423,779		500,000	2017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17.9.28.(월)교부결정 되어 설계 및 공사에 따른 필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강남대로9 5길39일원 노후하수 암거 정비	시설비	1,000,000	866,584		1,000,000	2017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17.9.28.(월)교부결정 되어 설계 및 공사에 따른 필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시설비	1,000,000			1,000,000	안골천우수암거(단면확 장)공사실시 설계용역중 (2017.5.25~2018.2.28.) 으로 금년도 발주에 어려움이 있음
교 통 행정과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시설비	1,122,200	607,548	602,248	500,000	서울시공모사업(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으로 선정된 당초안은 차로 축소시 야간주차가 어려워 인근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시행 어려움. 다만, 야간 주차가 가능토록 설계안을 변경하여 추진코자하나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협의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함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나. 사고이월

### (1) 일반회계-사고이월

○ 일반회계는 총 55건 187억 273만 6천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25건 60억 9,727만 2천원으로 2016년 15건 41억 1,439만 9천원보다 10건 · 19억 8,287만 3천원 증가함

※ 2016년 15건 41억 1,439만 9천원 / 2015년 19건 64억 657만 6천원

### ○ 사고이월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사고이월액 ㉢	이월사유
합 계(25건)			18,788,913	17,029,886	10,924,130	6,097,272	
주 거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설비	599,516	502,173	154,922	347,251	아파트 계약 변경 및 동절기 공사
	주택재건축 정비	연 구 용역비	25,600	25,440	7,840	17,600	2018.5월 용역완료
도 시 계획과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사 무 관리비	283,959	280,262	254,756	26,130	용역준공일정에 따른 기한 미도래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연 구 용역비	452,631	415,920	204,960	201,850	용역준공일정에 따른 기한 미도래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시설비	67,000	9,590		9,590	용역준공일정에 따른 기한 미도래
	도시유휴공 간 활용	민 간 위탁금	120,000	120,000		120,000	12월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연내 민간위탁 불가
	도시유휴공 간 활용	시설비	524,000	524,000		524,000	12월 보조금 교부에 따라 연내용역 및 공사발주 불가
건축과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	시설비	50,000	45,315	22,658	22,658	금년내 준공검사 완료 사실상 어려움
공 원 녹지과	공원 유지관리	사 무 관리비	172,750	161,341	158,597	2,744	특별교부금하반기(9월)교 부및설계용역등 준공기한 미도래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464,000	439,844	425,844	14,000	특별교부금하반기(9월)교 부및설계용역등 준공기한 미도래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시설비	4,926,574	4,062,459	3,967,659	94,800	디자인및완성도제고등 세부실행방안검토기간이 소요되어 시설물제작, 설치 절대공기부족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시 설 부대비	11,526	11,525	993	10,532	디자인 및 완성도 제고 등 세부 실행방안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본사업이 사고이월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이월
안 전 도시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설비	956,800	929,458	591,708	337,750	태안휴양소 내진보강공사 12월 낙찰업체 결정으로 연내 공사준공이 어려움
	방법용 CCTV 운영	시설비	3,537,000	3,489,639	2,564,639	925,000	특별교부금 10월말 교부로 연내 준공이 어려움(IoT기반 등산로 안전시스템 구축)
건 설 관리과	노점상·노상 작물 정비	시설비	728,000	728,000	183,421	544,579	연내지출불가
도로과	도로부속물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10,000	9,500		9,500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이행, 용역 발주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양 재 초 주 변 방 음 시설정비	시설비	340,000	340,000		340,000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말에 교부됨에따라 2017년연내에공사발주및 계약체결 어려움
	안전하고깨끗한 골목길개선사업	시설비	1,100,000	1,069,808	1,015,808	54,000	입찰공고시 유찰(2회)로 인한 착수시기 지연
	남부순환로342 길중부길보행 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700,000	700,000		700,000	특별교부세가 12월 교부, 연내 공사 계약 등 추진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제설대책 민 간위탁용역	시설비	365,677	336,667	145,677	190,990	당해사업이 2개년도에 걸쳐 시행(집행)
물 관리과	새원천하천 정비(단면 확장)사업	시설비	800,000	800,000	10,027	789,974	보상 절차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으로 지연
	여의천자전 거도로확장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연도말 교부에 따른 설계 및 발주기간 부족
교 통 행정과	대 중 교 통 환경개선	시설비	233,130	229,766	79,766	150,000	지방교부세2017년12월말 교부및선행절차이행에 따른 연내계약체결어려움
	보 행 자 및 어린이교통 안전시설	시설비	1,122,200	607,548	602,248	5,300	준공기한 미도래
	상습정체지 역 해소	연 구 용역비	448,550	441,631	362,631	79,000	준공기한 미도래
건 강 정책과	꽃마을보건 지소 운영	자산및 물품 취득비	250,000	250,000	169,976	80,024	공사 준공기한 연기 등으로 회계연도 내 물품검수 곤란

## (2) 특별회계-사고이월

- 주차장특별회계 1건 6억 349만 9천원으로, 2016년보다 2건·28억 9,970만 1천원 감소함

※ 2016년 3건 35억 320만원 / 2015년 3건 37억 1,900만원

### ○ 사고이월 특별회계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사고이월액 ㉢	이월사유
합 계(1건)			991,142	880,265	276,766	603,499	
주 차 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운영	시설비	991,142	880,265	276,766	603,499	주차장내 사고관련 법원감 정평가예정으로 착공지연

## 다. 계속비 이월

- 일반회계는 구 전체에 13건 165억 9,124만 5천원이며, 재정건 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은 없음

※ 2016년 없음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959~973쪽 참고

## 6.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4)

- 예산의 이용은 집행액이 없으며,
- 예산의 전용은 총 68건 28억 8,780만 6천원(일반회계)
- 예산의 이체는 총 36건 74억 9,531만 8천원(일반회계)

가.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전용

- 일반회계 총 68건, 28억 8,780만 6천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5건 2억 1,242만 5천원  
※ 2016년 7건 1,556만 6천원 / 2015년 4건 1,965만 5천원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4)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11. 9. 6., 2012. 2. 29., 2014. 3. 5.>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예산전용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15건)			16,539,753	212,425	212,425		
기 획 예산과	기관공통재정 효율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0,000	16,200		2017. 04.26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비 확보
	구정정책개발 및평가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39,800		16,200		
기 획 예산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201-01 사무관리비	35,770	29,800		2017. 04.26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비 확보
	구정정책개발 및평가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00,000		29,800		
기 획 예산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301-11 기타보상금	10,000	10,000		2017. 04.26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비 확보
	구정정책개발 및평가관리	207-01 연구용역비	229,800		10,000		
기 획 예산과	위원회통합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2,978	30,000		2017- 12-18	대외평가 수상 부서 포상금 예 산확보
	인센티브사업 추진	303-01 포상금	60,000		30,000		
기 획 예산과	소송배상금	305-01 배상금등	1,462,770	42,000		2017. 12.27	소송 수임료 및 인지대 부족분 확보
	효율적인 송무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76,863		42,000		
재무과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9,100	11,910		2017. 11.09	방배동 439-3번 지 구유일반재 산 행정대집행 집행비용확보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401-01 사설비	3,000		11,910		
주 거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책지원)	695,000	31,000		2017. 11.30	알기쉬운 아파 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 비 확보
	공동주택 관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8,500		31,000		
안 전 도시과	안전도시 기반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0	6,600		2017. 09.19	안전 야간경관 조명 설치 필름 추가제작에 필 요한 예산확보
	안전도시 기반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0,590		6,600		
안 전 도시과	안전도시 기반 구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8,400	3,120		2017. 09.19	안전 야간경관 조명 설치 필름 추가제작에 필 요한 예산확보
	안전도시 기반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23,232		3,120		

안 전 도시과	재난대응 훈련및교육	201-01 사무관리비	20,515	1,705		2017. 08.02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물품 구매를 위한 전용
	재난대응 훈련및교육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5		
안 전 도시과	비·채 안전거리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300	1,000		2017. 09.19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방안 공모 예산확보
	폭염대비무더위쉼터그늘막 설치운영	301-11 기타보상금			1,000		
건 강 정책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6,077,203	5,000		2017. 11.28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인한 부족예산 확보
	인력운영비	204-02 직급보조비	308,390		5,000		
건 강 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996,989	8,590		2017. 08.02	2017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구비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953		8,590		
의 료 지원과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사업	201-03 행사운영비	32,600	10,000		2017. 08.25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초청 예산확보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사업	301-07 외빈초청여비			10,000		
의 료 지원과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사업	308-10 공공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35,000	5,500		2017. 08.02	서초 글로벌 헬스케어 홈페이지 서비스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0,000		5,500		

## 다. 예산이체

- 일반회계 총 36건 74억 9,531만 8천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8건 37억 8,352만 3천원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및 세부사업 이체임

※ 2016년 6건 18억 6,192만 5천원-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경 등 2015년 해당사항 없음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18건)			13,212	13,212	3,783,523		
주 차 관리과	버스전용차 로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3,124	3,124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교 통 행정과	버스전용차 로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3,124		
주 차 관리과	버스전용차 로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4,661	4,661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교 통 행정과	버스전용차 로 지도단속	201-02 공공운영비			4,661		
주 차 관리과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927	1,927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교 통 행정과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1,927		
주 차 관리과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202-01 국내여비	3,200	3,20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교 통 행정과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202-01 국내여비			3,200		
주 차 관리과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	30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교 통 행정과	불법사업용·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		
안 전 도시과	방범용 CCTV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9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세부사업 이체
안 전 도시과	방범용 CCTV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820,719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세부사업 이체
안 전 도시과	방범용 CCTV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84,468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세부사업 이체
안 전 도시과	방범용 CCTV 운영	401-01 시설비			152,00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세부사업 이체
안 전 도시과	방범용 CCTV 운영	401-01 시설비			1,200,000	2017. 01.19	(사고이월예산) 직제개편으로인 한세부사업이체
안 전 도시과	초등학교스쿨존 CCTV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9,088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초등학교스쿨존 CCTV 운영	401-01 시설비			79,40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0,784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1,322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207-02 전산개발비			81,14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8,700	2017. 01.19	(사고이월예산)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안 전 도시과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0,600	2017. 01.19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

※ 2017회계연도 결산서 365~375, 407쪽 참고

## 7. 계속사업비 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라=가-나-다)
<b>계</b>	<b>5건</b>	<b>28,271,985</b>	<b>10,176,040</b>	<b>16,591,246</b>	<b>1,504,700</b>
반포3동청사 건립 (계속비)	주민행정과	5,187,299	1,666,163	3,521,058	79
서초4동청사 건립 (계속비)		11,359,920	3,033,027	8,322,273	4,620
내곡동청사 이전 (계속비)		1,341,230	475,980	865,250	0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계속비)	어르신 청소년과	9,879,663	4,508,670	3,870,992	1,500,001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계속비)		503,873	492,200	11,673	0

○ 2017년도 계속사업비는 총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2억 7,198만 5천원 중에서 108억 7,604만원을 지출하고 165억 9,124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없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949~957쪽 참고

## 8. 기금결산

○ 전체 기금은 총 16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30억 7,602만 4천원이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에 전년도말 조성액 132억 546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66억 9,089만 1천원, 당해연도 사용액 49억 6,885만 1천원으로 집행률 25%임

○ 기금 예치상황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보관함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마=(가)+나) (나=다+라)	집행률 (%) (사용액/전년도말조성액+조성액)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2017	2016	2015
계	198,202,479	14,873,545	25,844,421	10,970,876	213,076,024	4.9	4.0	
<b>재정건설위원회</b>	<b>13,200,546</b>	<b>1,722,381</b>	<b>6,690,891</b>	<b>4,968,511</b>	<b>14,922,924</b>	<b>25.0</b>	<b>27.1</b>	<b>37.9</b>
옥외광고 발전기금	2,244,111	274,741	844,627	569,887	2,518,851	18.5	22.5	24.0
화훼및농업 육성기금	1,429,292	59,689	59,689		1,488,981	0.0	0.0	0.0
재난관리 기금	5,018,618	1,323,367	1,772,889	449,522	6,341,985	6.6	18.1	33.7
도로굴착 복구기금	2,152,773	23,331	3,634,008	3,610,677	2,176,103	62.4	56.2	84.0
식품진흥 기금	2,355,752	41,253	379,678	338,425	2,397,004	12.4	14.2	8.2

※ 2017회계연도 결산서 413~469쪽 참고

### ○ 기금운용 개선방안

- 우리구는 2017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총액(6,339억원) 대비 기금총액(2,130억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약 148억원이 증가되었음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중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246억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14억원, 재정건설위원회는 2018.9.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며, 특히 통합관리기금은 조성액이 461억원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중 상당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이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충당하든지(참고로 2017.2.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억원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전출된 적이 있으나,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상 배치되는 것이라고 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였음), 아니면 16개 전체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9. 채권·채무 결산

###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33억 2,759만 2천원에서
- 당해연도에 60억 7,561만 4천원이 발생 및 61억 2,903만 1천원이 소멸하여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2억 7,417만 5천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일반회계 : 공무원 학자대여금 외 3건 79억 5,812만 1천원
  -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1건 5,320만 5천원
  - 기 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3건 52억 6,284만 8천원으로 2016년도말에 비해 총 2,620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3,327,592	△26,209	13,274,175
일반회계	7,157,921	800,200	7,958,121
특별회계	52,818	387	53,205
기 금	6,116,853	△854,004	5,262,849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없으며, 기금에 2건 2억 4,552만 2천원으로 2016년(2억 758만 7천원)보다 3,793만 5천원 증가함

(단위 : 천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이행기 간 도래예정액)
재정건설위원회(2건)		207,587	144,953	107,018	245,522	81,146
회궤및농업 육성기금	계	24,430	20,265	44,695	-	-
	원금	24,430	20,265	44,695	-	-
	이자	-	-	-	-	-
식품진흥 기금	계	183,157	124,688	62,323	245,522	81,146
	원금	182,500	123,073	62,173	243,400	81,146
	이자	657	1,615	151	2,122	-

-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577~583쪽 참고

## 10. 재산의 총괄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가	감소		
합계	4,241,399,974	192,678,460	53,855,650	4,380,222,784	
소계	4,195,487,955	186,520,176	40,167,987	4,341,840,144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3,347,117,402	135,778,454	39,405,639	3,443,490,217
	공용재산	848,328,612	50,741,721	762,348	898,307,986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41,941	-	-	41,941
일반재산	45,912,019	6,158,284	13,687,663	38,382,640	

○ 공유재산은 총 4조 3,802억 2,278만 5천원 상당의 금액이며, 2016년도 말에 비해 1,388억 2,281만 1천원 상당의 금액이 증가함

○ 토 지	2,753건	3,939,055,254천원
○ 건 물	152건	340,484,413천원
○ 임목죽	24,978건	541,352천원
○ 공작물	5,526건	97,811,603천원
○ 지적재산권	23건	260,162천원
○ 용익물건	4건	2,070,000천원

○ 물품

(단위 : 수량-개 / 금액-천원)

구 분 (정수)	2016년도말 보유 현황		2017년도 증감						2017년도말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합계	수량	1,369	233	131	364	10	26	36	1,697
	금액	9,350,897	924,431	1,139,279	2,063,710	55,704	158,763	214,467	11,200,140

- 2017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697개, 금액 112억 14만원으로 2016년도말 대비 수량은 328개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8억 4,924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977~985쪽 참고

## 11.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90억 3,886만 4천원으로 2016년도말 41억 4,499만 7천원에 비해 48억 9,386만 7천원 증가함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계(㉡)=㉢-㉣	증가액(㉢)	지출액(㉣)	
합계	4,144,997	4,893,868	25,481,901	20,588,033	9,038,864
보증금	384,413	△364,992	429,627	794,619	19,421
보관금	2,879,491	2,751,204	18,594,567	15,843,364	5,630,695
잡종금등 기타	881,093	2,507,656	6,457,707	3,950,051	3,388,748

※ 2017회계연도 결산서 941~944쪽 참고

## 12. 금고의 결산

- 서초구금고(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통보된 2017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잔액(금고보관액) (㉠ - ㉡)
합 계	719,378,124	591,179,886	128,198,239
일 반 회 계	633,936,072	539,857,878	94,078,194
특 별 회 계	85,442,052	51,322,008	34,120,0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9,062	294,099	54,963
주차장특별회계	85,092,990	51,027,909	34,065,082

※ 2017회계연도 결산서 593~595쪽 참고

## 13. 성인지예산 결산

-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5개 사업 607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1건 64억 9,992만 7천원을 지출하여 구 전체의 10.69%를 차지함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개(384억 6,3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개(185억 4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개(38억 2,100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45	68,278,859	100%	60,788,407	100%	89.03 %
재정건설위원회	11	8,220,918	12.03%	6,499,927	10.69%	82.96%
도시관리국	2	3,931,899	5.76 %	3,137,279	5.16 %	79.79 %
안전건설교통국	4	3,265,698	4.78 %	2,488,909	4.09 %	76.21 %
주차관리과	1	781,374	1.14 %	649,407	1.07 %	83.11 %
보건소	4	241,947	0.35 %	224,332	0.37 %	92.72 %

※ 2017회계연도 결산서 1009~1131쪽 참고

### Ⅲ

### 검토의견

■ 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 지방자치법 제129조<sup>5)</sup> 및 제134조<sup>6)</sup>, 지방회계법 제14조<sup>7)</sup>,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sup>8)</sup>,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sup>9)</sup> 및 제14조<sup>10)</sup>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 5)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9)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 1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11. 5. 30.]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sup>11)</sup>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임

## ■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4,521억 8,655만 8천원으로 2016년(165억 3,151만 8천원)에 비해 4,356억 5,504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결산액은 850억 9,299만원으로 2016년(703억 8,699만 2천원)에 비해 147억 599만 8천원이 증가함

###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

#### <세무1과>

등록면허세 2억 8,582만원, 재산세 15억 7,704만원 및 지난해도 수입(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체납 누적분) 약 75억원이 체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폐업, 부도, 자금압박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체납이 80%이상 차지하고, 개발사업 지연 및 중단 등으로 파이시티, 파이랜드,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의 부도로 징수·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11)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 체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체납사유	체납액	점유비율
계	9,415,267	100
경제여건 악화	8,200,330	87.1
무재산	2,509,004	26.65
폐업 또는 부도	3,133,282	33.28
채무자회생법에의한 유예	1,540,468	16.36
자금압박	1,017,576	10.81
행방불명	254,902	2.71
납세태만	872,489	9.27
국외이주	87,546	0.93

지난년도 수입(위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약 465억원이 체납(누적분)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체납 중 과태료가 323억(69.6%)으로, 차량관련 과태료가 299억(92.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장기간 방치 및 체납된 상태에서 말소(차령초과)가 가능하여 납세의식 결여 및 선순위로 압류하고도 조세채권 보다 후순위채권으로 징수의 한계와 납부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등이 주된 체납원인이라 할 것임

○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및 체납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세목)	이월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점유비
지난년도 수입	51,653,299	3,602,054	1,517,864	46,533,380	100.00%
재산임대수입	10,757	2,938		7,819	0.02%
사용료수입	274,913	72,364	18,074	184,475	0.39%
사업수입	250	250			
부담금	4,887,774	112,227	174,159	4,601,388	9.8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5,939,468	3,349,830	1,325,631	41,264,007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291,193	1,464,212	28,055	7,798,926	16.76%
변상금 및 위약금	1,330,247	107,952	130,806	1,091,489	2.34%
과태료	35,318,028	1,777,665	1,166,770	32,373,593	69.57%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3,188	338	177	2,673	0.01%
기타수입	540,135	64,446		475,689	1.02%

-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77.2%인 752억 4,278만 2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4억 520만 3천원, 결손처분은 15억 1,786만 4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은 490억 7,096만 1천원으로 체납점유율이 구 전체의 98.7%를 차지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2016년 165억 3,151만 8천원 / 2015년 254억 4,817만 2천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99.6%인 852억 2,580만 3천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0억 9,299만원, 결손처분은 1억 3,19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은 331억 6,088만 7천원임

### 〈주거개선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억 7,993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주로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와 달리 가산금이 없어 납입 기한 내 징수율이 낮은 편이고, 위반건축물 정비·단속 계획에 따라 반복부과대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66%, 1,762,057천원) 및 항측조사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8.1%, 214,770천원) 부과·징수 일정이 하반기 말(10월~11월)에 집중됨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한 채 회계연도 마감으로 체납액으로 남게 된 것이 주요 사유로 보여지며, 이에 부과·징수 절차 일정을 앞당겨 회계연도 내에 압류처분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건축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분의 체납액 2억 9,069만 7천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의 특성상 가산금이 없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 부과로 인한 납부의식 결여와 부과금액이 300만원이상의 고액이 많다 할 것으로 경제적 여건상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위 납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라 할 것으로 체납 시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부동산강제경매신청) 이행이 용이할 것으로 그에 따른 징수율 제고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1억 3,608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이는 여러 부문의 사용료 중 체납비중이 높은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사용료 8,582만원이 체납된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 증가에 따른 부과금액이 증가도 하였으나 점용대상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고,

### 〈교통행정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9억 6,55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이는 체납자 및 법인 등의 주소 불명으로 고지서 송달 불가능(등기우편 50% 내외 반송) 및 경제적 사유 등으로 체납되고 있으며, 또한 체납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차량(대포차, 폐업된 법인명의 차량 등)에 부과 차량 및 부동산에 압류(압류율 89%)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부동산 부분은 압류만으로 그치지 말고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고려해 봄직하고,

### 〈건강정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2억 3,480만 1천원이 체납되었으며, 이는 금연구역 확대 및 집중적 금연단속으로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나, 징수율 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5년(67.4%)→ 2016년(77%)→ 2017년(81.1%)〕

### 〈주차관리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31억 4,697만 6천원과 지난년도 수입 301억 4,589만 3천원(체납 누적분)이 체납된 것으로, 이는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납부회피, 납부태만 만연으로 인한 징수율 하락이 주된 사유이며, 그 외에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 및 부도 등으로 법인차량의 납세지연, 이의제기 신청 등 소송계류로 인한 지연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체납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 과징금 및 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 31억 4,697만 6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체납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손		다음연도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b>계</b>	223,312	9,187,302	171,516	6,040,325	0	0	51,796	3,146,976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세태만	
주차관리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3,312	9,187,302	171,516	6,040,325	0	0	51,796	3,146,976	65.7	소송계류(이의제기 신청) 중, 행방불명 등 거주지 등록불명 등

-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301억 4,589만 3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체납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손		다음연도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b>계</b>	5	48,532	0	0	0	0	5	48,532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3	41,082					3	41,082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후 위탁관리금 미납
	위약금	2	7,450					2	7,450	-	공영주차장 위탁자 모집 입찰에 참여 낙찰자로 선정 되었으나 계약불이행 위약금 (입찰일 : 97.2.17) 2002.4.1로 재산압류 조치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체납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손		다음연도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차관리과	건축이행 강제금	1	44,352					1	44,352	-	교대역 동측 주차장부지 무허가 가설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2008.12.24 채권압류).
	행정대집행비	1	78,056					1	78,056	-	교대역동측 주차장부지 무허가 가설건물 철거 행정대집행비 (2008.12.24 채권압류).
	변상금	2	66,053					2	66,053	-	교대역동측 주차장부지 무허가 가설건물 철거 변상금 (2008.12.24 채권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680,951	33,288,014	70,807	3,379,114	1,975	131,982	608,169	29,776,918	10.5	경기침체로 명의이전,소송계류, 폐업·부도로 인한 법인차량의 납세지연, 폐차말소까지 납부지연 및 차령초과 말소 등

구 분	결손현황		결손사유	비고
	건수	금액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	1,975	131,982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차령초과말소 등에 의한 물건 미확보 등으로 인한 시효결손 처리(향후 차량 재취득시 대체압류 처리)

## ■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 ○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28억 2,255만 2천원으로 2016년도(686억 1,921만 1천원)보다 442억 334만 1천원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107억 1,001만 6천원으로 2016년도(52억 9,491만원)보다 54억 1,510만 6천원 증가함

※ 세출예산현액 2016년 686억 1,921만 1천원 / 2015년 664억 591만 8천원  
집행잔액 2016년 52억 9,491만원 / 2015년 55억 5,079만원

#### - 주요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

-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은, 1억 5,282만이 불용(72%)되었는데, 이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활동 및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으나, 대부분 교통 및 환경개선·편의시설 확충 등의 건의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실행할 만한 창의제안이 적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차회 이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불용율 감소 노력과 아울러 이를 고려한 신축적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임.

#### <재무과>

-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부분에서 2,556만 6천원이 불용(35.2%)되었는데, 이는 2017년에 용도폐지된 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료로 3천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매각 계획 변경 등으로 감정료가 불용된 것이고,  
- 국·시유지관리 부분은 1,213만 8천원이 불용(38%)된바, 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나 경비 지출 후 잔액 발생분으로 이는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임

#### <세무1과>

- 채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부분에서 27,561천원이 불용(44%)되었으

며, 이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12) 제2항 제2호에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차회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한 예산 축소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

## 〈주거개선과〉

- 공동주택 관리지원 부분에서 2억 7,259만원이 불용(17.2%)되었는데,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설비 97,342,780원 중 어린이놀이터보수, 도로보수, 수목전지 설계용역 낙찰차액(60,302,780원)과 보조사업자(경남아너스빌 외 3개단지)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37,040,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90,408,660원 중 보조사업자(래미안서초스위트 외 8개단지, 10개 사업)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68,567,000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낙찰차액(21,841,660원)이라 할 것으로, 주된 사업포기 사유는 단지내 주민들간의 내부 갈등 등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 2,460만원이 불용(76.7%)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방배15구역 추진위원회 설립 지연에 따른 지원금액이 불용(93,640,000원)된 것으로, 그 주된 사유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2014년경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2017. 12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보류되고, 주민대표자가 교체되는 과정에 주민들간의 의견 대립 등으로 추진위 설립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매년 이를 대비한 예산편성이 결과적으로 불용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등 적절한 예산책정이 필요해 보임

**12)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도시계획과〉

-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은, 1억 658만원이 불용(12.6%) 되었으며, 이는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등 5개 세부사업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2,900만원과, 도시모형 제작사업(구청 1층 로비)에 대한 구체적 사업(미확정)이 보류 결정된 사안 등으로 7,755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보임

- 도시유희공간 활용 사업은, 사업예산 6억 4,4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한바, 이는 예술의전당 제2지하보도 지하갤러리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억 4,400만원이 교부(2017.11.10.- 6억원/12.14.- 4,400만원)된 예산으로 년도 말에 교부되어 지출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에서 불용처리 시 서울시에 전액 반납해야 할 사정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 보여지나, 구체적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나, 명시이월하기에도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이 또한 11월경에 예산심의를 하는 일정 관계상, 이를 달리 처리할 방안이 없어 구 방침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관련하여 정부나 서울시에서 매년 년말에야 평가에 의한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등 교부금 지급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사고이월 처리 충족 조건규정이 완화되기 전에는 지속적인 규정위반 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임

## 〈공원녹지과〉의 경우

-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345,472천원이 불용(26.9%)되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인 배상금 부분 278,577천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는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이 연내(2017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배상금 지급을 위한 2017년 추경 예산을 편성(707,000천원)하였으나 일부 소송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익년도(2018년)로 넘어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1,281,435	935,963	345,47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8,054	282,926	35,128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10,740	9,998	742	소모성 물품구입
공공운영비	29,761	23,526	6,235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재료비	13,000	12,149	851	소모성재료 구입
배상금등	707,000	428,423	278,577	배상금 지급
시설비	200,000	176,642	23,358	- 위험수목 정비사업 - 수목이식공사 - 폐기물 처리용역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880	2,299	581	동력전정기 구매 등

- 노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이중 868,904천원의 집행잔액이,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총사업비가 50억원으로 238,657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나, 위 두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이라 할 수 있는 낙찰차액 합계 부분이 약 796,000천원이라 할 것이며,

- 녹지대·가로수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174,772천원이 불용(7.4%)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공사 및 물품계약에 따른 낙찰차액(117,298천원) 및 유보액(9,714천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 47,759천원으로 미 집행 된 것임

〈안전도시과〉

- 사회복지무요원관리에 150,160천원이 불용(25.2%)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무요원 인가 133명 대비 102명으로 31명분의 보상금(급여, 식비, 교통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나, 2016년 결산에 따르면, 예산현액 538,125천원에 지출액 475,331천원, 집행잔액 62,793천원(불용율 11.7%)이라 할 것이나, 2017년 예산을 전년도 지출액보다 보다 117,771천원을 증가·편성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용율이 더 높아졌다 할

것이므로, 차회 이 부분을 고려한 감액편성이 요구되고,

- 방법용 CCTV 운영으로 311,855천원이 불용(5.8%)되었으며, 이는 CCTV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 및 전기 이용요금이며, 위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KT의 임대망(약 900개소)을 사용하면서 매년 약 12~14억원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해왔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자가망을 설치(800개소 설치에 약 35억원 소요)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2017년에 신규로 70개소 자가망 전환(금년에 900여개소 전체 자가망 설치 완료예정)에 따른 전용회선 비용 절감분(131,832천원)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132,599천원)은 낙찰차액이라 할 것임

### 〈도로과〉

-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는 113,921천원이 불용(9.3%) 되었으며, 이는 모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 조명시설물 관리에서 108,936천원이 불용(5.1%) 되었으며, 이는 공공 운영비에서 45,104천원, 예산유보금 26,699천원, 재료비에서 예산유보금으로 27,344천원의 집행잔액 등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금과 기존 조명을 광효율 및 에너지절감이 우수한 LED등기구의 지속적 교체로 인해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보이며,

- 인력운영비(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은 124,901천원이 불용(12.5%)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2017. 2월경 공무원 1인의 퇴직으로 무기계약직 1인에 대한 소요예산과 초과근로에 대한 예산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로 79,369천원 등이 미집행된 것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등의 오류는 있어 보이나, 2016년 결산 시 전체 인력운영비 불용율이 31.4%로 과다하였으나 전년도는 불용율이 그에 비해 약 18%정도가 감소하였음

- 도로부속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9,500천원 전액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이는 서초래미안 아파트 요구사항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협의하였으나 사유지 점용 및 고압선 이설에 대한 인근 아파트(롯데캐슬, 유원)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유지 점용 최소화 및 고압선

이설이 불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7. 12월경에 야 타당성조사를 발주한 관계로 부득이 당해 연도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현재 위 사업은 완료된 상태임

- 양재천 주변 방음시설 정비사업은 340,000천원이 전액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당해 연도 10월 말경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일정상 공사발주(공사설계, 방침, 입찰절차 등) 및 계약체결에 어려움으로 이 또한 세출예산 불용 방지(교부처에 반납)를 위한 사고이월로 보이고,

- 남부순환로342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7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나, 이도 역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2017.12.7)되어 공사발주 절차 및 계약체결의 진행 불가로 인한 것임

### 〈물관리과〉

-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은 반포빗물펌프장 외 6개소가 운영 중인바 2억 1,911만원이 불용(31.7%)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부문으로 수방기간(4.15~10.15)중 강우량이 적고 비가 오지 않는 청정기간에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일시 휴지하여 전기요금(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보이나, 위 부분 예산은 수개년도에 걸쳐 항상 같은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보이는 관계로 차제에 차회 예산편성 시에는 위 수개년도 불용액 통계 1년 평균치가 약 2억원정도인 관계로 그 부분 예산 감액편성이 요구되고, 특별히 전기요금 증가요인 발생 시에는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고,

- 새원천 하천정비 사업은 789,973천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사전절차(소하천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수립, 예정지 고시 및 분할측량실시) 이행기간의 소요 및 토지주 사전 보상 협의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절차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으로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공사기간 2017. 11. 30.~2018. 11. 29)로 인한 이월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 여의천 자전거도로 확장 부분은 5억원 전액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사

업예산이 연도말 교부(2017.12.8.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됨에 따라 구 예산으로 간주처리(2017.12.20) 후 실시설계 및 발주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예산 이월이 된 사항임

### 〈교통행정과〉

- SEOCHO-BIKE(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사업은, 1억 4,633만원이 불용(63.7%)되었으며, 이는 서초구에서 2016. 10월부터 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선정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 5월경부터 운영 개시를 하였으며, 한편 서울시는 2017년 “따릉이 자전거 사업”을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하면서 서초구와 중복된 사업으로 이를 조기 종료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2017년 중 “따릉이 자전거 사업” 시행시기를 미확정 상태로 각 구에 안내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서울시의 따릉이 사업이 조기 시행된 결과 과다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그에 따른 사업 종료로 서초구 공공자전거는 관내 주민센터에 배부된 것으로 보임

### 〈건강정책과〉

- 인력운영비로 384,699천원이 불용(3.5%) 되었으며, 이는 일반임기제 의사 미채용, 의료지원과장 공석 및 직원 휴직 등과 2017.10월 개소를 목표로 하였던 꽃마을보건지소 개소 지연에 따른 인력운영비 미지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임

### 〈건강관리과〉

-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123,522천원이 불용(19%)되었으며,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산모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예산편성시 2017년 하반기 예상 출생아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신청자 수가 647명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서초구 거주가 대상 요건으로 출산 후 90일까지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사업예산 19,500천원 전액 불용된바, 이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 보조금이 미교부된 사업임

### ○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52억 2,580만 3천원으로 2016년도(700억 4,506만 8천원)보다 151억 8,073만 5천원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335억 9,439만 6천원으로 2016년도(512억 1,459만 5천원)으로 176억 2,019만 9천원 감소함

※ 세출예산현액 2016년 700억 4,506만 8천원  
집행잔액 2016년 512억 1,459만 5천원

- 주요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 〈주차관리과〉

-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625,805천원이 불용(5.9%) 되었으며, 이는 아래표와 같이 시설비 544,871천원(5.4%, 예산 현액 10,097,038천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예산중 재배정 예산 366,387천원을 우선 사용하고 집행잔액 188,484천원 발생이 주요 사유라 할 것이고,
- 집행내용

(단위: 원)

목 (세목)	예산액	예산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전년 이월	추경	전용			사고	계속비		
계	10,490,038,000				10,490,038,000	9,864,232,230			625,805,770	5.9
시 설 비	10,097,038,000				10,097,038,000	9,552,166,230			544,871,770	5.4
감 리 비	393,000,000				393,000,000	312,066,000			80,834,000	20.5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113,073천원이 불용(83.7%) 되었으며, 이는 열린주차장(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관제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공

공기관 개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시설개선비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요청하지 않은 민간 건물주가 적은 관계로 시설비 대부분이 불용(106,770천원)이 주된 사유로 차회 이를 감안한 신축적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이며,

-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사업은 140,109천원이 불용(35.6%) 되었으며, 이중 구획선 정비공사 낙찰차액(36,393천원) 및 작업물량 변경(도색, 삭제 물량 감소)에 집행잔액과 요금인상 계획에 따라 입간판 정비 일부실시에 따른 집행잔액(33,400천원), 보험금, 배상금 등 집행 미발생 및 집행잔액(30,246천원)인 시설비 합계 110,880천원발생이 주요 불용 내용이라 할 것이고,

-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에 183,203천원이 불용(10.1%) 되었으며, 이중 공공운영비 160,293천원(15.8%, 예산현액 1,011,260천원)으로 사전 통지고지서 자진납부 증가로 일반우편발송 요금 감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신규교체 기간이 짧아 장비 수리비등 미집행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에 290,983천원이 불용(39.7%) 되었으며, 이는 불법주차된 차량 견인 및 피견인 차량 보관사업으로 위 불용액 중 252,121천원이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으로, 그 주된 사유로 견인 위주의 불법주차 단속 관행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6. 9.) 및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의 견인조치 등으로 인한 견인건수 감소로 견인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인 것으로 예산현액의 40%에 달하는 불용률과 2016년도 결산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유로 비슷한 집행잔액 수치를 감안하여 매년 반복되는 불용을 지양해야 할 것임

## ■ 구 전체 결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 세입 부분 중 지방세는 2,037억원으로 전년(1,840억원) 대비 약 200억원정도가 증가한 걸로,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결과 재산세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도 1,296억원으로 전년(899억원) 대비 약 400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

부거래는 1,853억원으로 전년(1,327억원) 대비 약 526억원이 증가(주요 내부거래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280억원)하였으며, 구 전체 세입이 7,193억원으로 전년(6,114억원) 대비 약 1,000억원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세출 또한 5,911억원으로 전년(4,540억원) 대비 약 1,371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사회복지 부분 지출이 2,339억원으로 전체 세출 중 약 40%에 육박한 점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281억 9,823만 8천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비는 193억 623만 4천원, 계속비 이월 165억 9,124만 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9964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6억 5,197만원으로 전년(약 947억원) 대비 약 130억원, 사고이월비는 전년(약 499억원) 대비 약 306억원 정도가 각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약 165억원으로 전년(약 77억원) 대비 약 88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소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960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세입부분의 과다 체납액 등 체납 비율이 높은 부분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압류조치만이 아닌 그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절감 등 발생 사유 및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편성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 아울러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정부간

이전수익(보조금)도 전년 대비 약 50억원 정도 감소되고,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81.5%(2013년 73.8%, 2014년 63%, 2015년 57.4%, 2016년 57.9%)에서 2017년도에 약 52%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이상의 검토 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1)

##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처리		비율(%)		
	(가)	(나)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부과율 (나/가)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구 전 체	610,325,333	696,619,815	633,936,072	3,544,570	59,139,173	114.1	103.9	91.0
재정건설위원회	<b>426,348,893</b>	<b>514,217,353</b>	<b>452,186,558</b>	<b>3,544,570</b>	<b>58,486,230</b>	120.6	105.9	87.9
기획재정국	<b>384,924,361</b>	<b>471,116,990</b>	<b>411,563,306</b>	<b>3,544,570</b>	<b>56,009,115</b>	122.4	106.9	87.4
기획예산과	28,294,000	28,429,010	28,381,857	0	47,153	100.5	100.3	99.8
재무과	130,488,241	127,008,518	126,995,720	0	12,798	97.3	97.3	100.0
세무1과	219,435,663	281,037,184	221,543,451	3,544,570	55,949,164	128.1	101.0	78.8
세무2과	6,706,457	34,642,278	34,642,278	0	0	516.6	516.6	100.0
도시관리국	<b>7,736,290</b>	<b>8,779,300</b>	<b>7,740,057</b>	<b>0</b>	<b>1,039,244</b>	113.5	100.0	88.2
주거개선과	1,455,036	2,848,815	2,268,885	0	579,930	195.8	156.0	79.6
도시계획과	1,234,546	1,365,231	1,362,001	0	3,230	110.6	110.3	99.8
건축과	815,036	1,101,864	811,166	0	290,698	135.2	99.5	73.6
공원녹지과	2,954,372	3,062,465	2,923,279	0	139,186	103.7	98.9	95.5
부동산정보과	1,277,300	400,925	374,726	0	26,200	31.4	29.3	93.5
안전건설교통국	<b>23,180,525</b>	<b>22,290,686</b>	<b>21,112,395</b>	<b>0</b>	<b>1,178,292</b>	96.2	91.1	94.7
안전도시과	3,475,051	3,474,596	3,474,252	0	344	100.0	100.0	100.0
건설관리과	8,051,967	7,876,725	7,672,870	0	203,855	97.8	95.3	97.4
도로과	1,359,900	1,360,806	1,352,215	0	8,592	100.1	99.4	99.4
물관리과	5,644,192	4,501,192	4,501,192	0		79.7	79.7	100.0
교통행정과	4,649,415	5,077,367	4,111,866	0	965,501	109.2	88.4	81.0
보건소	<b>10,507,717</b>	<b>12,030,377</b>	<b>11,770,800</b>	<b>0</b>	<b>259,578</b>	114.5	112.0	97.8
건강정책과	1,295,567	2,238,645	2,003,844	0	234,801	172.8	154.7	89.5
위생과	304,040	1,000,124	975,348	0	24,777	328.9	320.1	100.0
건강관리과	7,575,968	7,395,132	7,395,132	0	0	97.6	97.6	100.0
의료지원과	1,152,344	1,215,600	1,215,600	0	0	105.5	105.5	100.0
병배보건지소	179,798	180,876	180,876	0	0	100.6	100.6	100.0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부과율 (나/가)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구 전 체	85,532,295	118,800,790	85,442,052	131,982	33,226,755	138.9	99.9	71.9
재정건설위원회	85,225,803	118,385,859	85,092,990	131,982	33,160,887	138.9	99.8	71.9
주차장	85,225,803	118,385,859	85,092,990	131,982	33,160,887	138.9	99.8	71.9

(참고2)

##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 1. 부서별 결산

####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b>구전체</b>	<b>610,325,333</b>	<b>539,857,878</b>	<b>40,243,124</b>	<b>30,224,331</b>	<b>5.0</b>
<b>재정건설위원회</b>	<b>112,822,552</b>	<b>92,501,960</b>	<b>9,610,575</b>	<b>10,710,016</b>	<b>9.5</b>
<b>기획재정국</b>	<b>8,761,144</b>	<b>5,790,270</b>	<b>0</b>	<b>2,970,874</b>	<b>33.9</b>
기획예산과	6,669,170	3,896,651	0	2,772,519	41.6
재무과	425,243	352,917	0	72,326	17.0
세무1과	1,018,797	938,657	0	80,140	7.9
세무2과	647,934	602,045	0	45,889	7.1
<b>도시관리국</b>	<b>25,766,381</b>	<b>21,168,187</b>	<b>1,904,458</b>	<b>2,693,735</b>	<b>10.5</b>
주거개선과	2,679,398	1,861,139	364,851	453,407	16.9
도시계획과	3,400,455	1,769,575	1,394,873	236,007	6.9
건축과	291,055	236,676	22,658	31,721	10.9
공원녹지과	19,078,460	17,013,107	122,076	1,943,277	10.2
부동산정보과	317,013	287,690	0	29,323	9.2
<b>안전건설교통국</b>	<b>47,787,799</b>	<b>37,690,557</b>	<b>7,626,093</b>	<b>2,471,149</b>	<b>5.2</b>
안전도시과	12,675,256	10,741,036	1,262,750	671,470	5.3
건설관리과	3,392,495	2,800,494	544,579	47,421	1.4
도로과	12,741,946	10,613,769	1,294,490	833,687	6.5
물관리과	16,388,206	11,889,834	3,789,974	708,399	4.3
교통행정과	2,589,896	1,645,424	734,300	210,172	8.1
<b>보건소</b>	<b>30,507,228</b>	<b>27,852,946</b>	<b>80,024</b>	<b>2,574,258</b>	<b>8.4</b>
건강정책과	14,506,814	13,757,497	80,024	669,293	4.6
위생과	360,399	357,154	0	3,245	0.9
건강관리과	13,407,875	11,721,304	0	1,686,571	12.6
의료지원과	2,020,016	1,811,771	0	208,245	10.3
방배보건지소	212,124	205,220	0	6,904	3.3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b>구전체</b>	<b>85,532,295</b>	<b>51,322,007</b>	<b>603,499</b>	<b>33,606,789</b>	<b>39.3</b>
<b>재정건설위원회</b>	<b>85,225,803</b>	<b>51,027,908</b>	<b>603,499</b>	<b>33,594,396</b>	<b>39.4</b>
<b>교통행정과</b>	<b>3,773,200</b>	<b>3,738,175</b>	<b>0</b>	<b>35,025</b>	<b>0.9</b>
<b>주차관리과</b>	<b>81,452,603</b>	<b>47,289,733</b>	<b>603,499</b>	<b>33,559,371</b>	<b>41.2</b>

## 2.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 일반회계

(단위:천원)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구 전체	30,224,331	1,071,897	1,606,110	16,466,226	8,838,098	2,242,000
재정건설위원회	<b>10,710,016</b>	<b>594,790</b>	<b>705,685</b>	<b>5,674,249</b>	<b>1,493,297</b>	<b>2,242,000</b>
기획재정국	<b>2,970,874</b>	-	<b>256,081</b>	<b>460,655</b>	<b>12,138</b>	<b>2,242,000</b>
기획예산과	2,772,519	-	202,002	328,517	-	2,242,000
재무과	72,326	-	3,724	56,464	12,138	
세무1과	80,140	-	24,352	55,788	-	
세무2과	45,889	-	26,003	19,886	-	
도시관리국	<b>2,693,735</b>	<b>545,258</b>	<b>125,763</b>	<b>1,820,914</b>	<b>201,802</b>	
주거개선과	453,407	171,353	40,689	145,780	95,586	
도시계획과	236,007	55,000	3,436	177,538	33	
건축과	31,721	-	6,450	16,848	8,424	
공원녹지과	1,943,277	313,705	66,467	1,472,646	90,459	
부동산정보과	29,323	5,200	8,721	8,102	7,300	
안전건설교통국	<b>2,471,149</b>	<b>46,011</b>	<b>220,453</b>	<b>2,158,782</b>	<b>45,903</b>	
안전도시과	671,470	486	76,111	572,982	21,891	
건설관리과	47,421	9,150	3,788	34,483	-	
도로과	833,687	34,865	70,002	706,456	22,364	
물관리과	708,399	-	52,745	655,314	340	
교통행정과	210,172	1,510	17,807	189,547	1,308	
보건소	<b>2,574,258</b>	<b>3,521</b>	<b>103,387</b>	<b>1,233,896</b>	<b>1,233,454</b>	
건강정책과	669,293	3,048	67,958	548,755	49,532	
위생과	3,245	373	1,306	1,566	-	
건강관리과	1,686,571	-	20,080	633,884	1,032,607	
의료지원과	208,245	100	12,284	44,584	151,277	
방배보건지소	6,904	-	1,759	5,107	38	

###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예비비
구 전체	33,606,789	-	117,720	3,202,224	101,781	30,185,064
재정건설위원회	33,594,396	-	117,720	3,202,223	89,389	30,185,064
주차장특별회계	33,594,396	-	117,720	3,202,223	89,389	30,185,064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하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

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밖의 회계년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회계법]

●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외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 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불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소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 
- I.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전부서) .. 1
  - II.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현황(전부서) ..... 8
-